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173 제출연월일: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 본문 중 "제34조 또는 제35조"를 "제3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뉴스통신사 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뉴스통신사업자 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5조 및 제36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u><삭 제></u>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	
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	
한 사람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이	
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u>자</u>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제36조(양벌규정)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34</u> 조	<u>제34조</u>
<u>또는 제35조</u>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신 설>

<신 설>

1. ~ 3. (생략)

② (생략)

제37조(과태료)	1	

---.

-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뉴 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 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뉴스통
 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
 집인으로 선임한 자
- 3. ~ <u>5</u>. (현행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